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57호
2. 발 의 자 : 권순선 의원
3. 발의일자 : 2019. 1. 30.
4. 회부일자 : 2019. 1. 31.

### II. 제안이유

- 교육감 사무의 무분별한 민간위탁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교육감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 III. 주요내용

- 교육감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안 제4조의2)

####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의안 별첨).
3.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입법예고(2019. 2. 8. ~ 2. 15.) : 의견 없음.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19년 1월 30일 권순선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357호로 발의되어 2019년 1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여 무분별한 민간위탁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의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sup>1)</sup>
-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sup>2)</sup>

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2) 「지방자치법」 제104조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이와 같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이 조례나 교육 규칙으로 교육감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교육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시 민주성, 객관성 및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 지방의회와 교육감 간에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는 것인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범위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도 민간위탁 제도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민주역사체험올레길 사업, 노동인권 체험교육 프로그램, 대안교육위탁기관운영, 마을기반형교육복지협력사업 등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sup>3)</sup>

- 다만 기존의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교육감의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 선정절차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측면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관여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전 통제장치의 부재로 인해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그것이 주민의 복리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나 예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방의회가 조례로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것”이라는 법령해석을 한 바도 있습니다(법제처 2009. 7. 3. 회신 09-0194 해석례).

---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2018~2019년 민간위탁 현황은 [붙임] 참고.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 제4조의2가 교육감의 민간위탁에 대해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은 물론 동의의 유효기관을 규정한 것은 민간위탁의 공정성, 투명성,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권 등을 향상시켜 시민의 교육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도 동 조례개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530, 2019.2.14).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 2018~2019년 민간위탁 사업 현황(2019.2.7. 기준)

(단위: 천원)

연도	담당부서	위탁사무명	수탁기관명	위탁비용	위탁기간		
					최초위탁일	시작일	종료일
2018	민주시민 교육과	민주체험올레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00,000	2018.03.26.	2018.03.26.	2018.12.31.
		역사체험올레길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150,000	2018.03.06.	2018.03.06.	2018.12.31.
		노동인권체험교육 프로그램	(재)전태일재단	30,200	2018.11.01.	2018.11.01.	2018.12.21.
	학생생활 교육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시립중앙청소년수련관 (고드림학교)	67,379	2012.03.01.	2018.03.01.	2019.02.28.
			시립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꿈나무학교)	65,092	2018.03.01.	2018.03.01.	2019.02.28.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꿈예학교)	65,001	2013.03.01.	2018.03.01.	2019.02.28.
			강동청소년누리터 (누리다학교)	57,094	2018.03.01.	2018.03.01.	2019.02.28.
			서대문청소년수련관 (도시속작은학교)	63,916	2005.03.01.	2018.03.01.	2019.02.28.
			서울청소년수련관 (동그라미학교)	65,188	2016.03.01.	2018.03.01.	2019.02.28.
			(사)국제청소년연합 (링컨학교)	141,186	2006.03.01.	2018.03.01.	2019.02.28.
			구림마포청소년문화의집 (비전학교)	62,955	2015.03.01.	2018.03.01.	2019.02.28.
			평생교육시설성지중고등학교 (성지재능학교)	104,194	2001.03.01.	2018.03.01.	2019.02.28.
			(사)한빛청소년대안센터 (세움학교)	66,588	2013.03.01.	2018.03.01.	2019.02.28.
			(사)한국사회문화예술진흥원 (예인미용예술학교)	104,146	2013.03.01.	2018.03.01.	2019.02.28.
			손과발 (오름학교)	104,726	2012.03.01.	2018.03.01.	2019.02.28.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참좋은학교)	61,188	2013.03.01.	2018.03.01.	2019.02.28.
			평생교육시설청량정보고등학교 (청량드림학교)	18,486	2017.03.01.	2018.03.01.	2019.02.28.
			(재)청소년희망재단 (청소년희망학교)	92,639	2010.03.01.	2018.03.01.	2019.02.28.
			(사)한국연예예술교류협회 (한국연예예술학교)	102,812	2015.03.01.	2018.03.01.	2019.02.28.
			(사)꿈더하기 (꿈더하기학교)	106,575	2016.03.01.	2018.03.01.	2019.02.28.
			한국장교복지재단 (나래대안학교)	65,560	2010.03.01.	2018.03.01.	2019.02.28.
			노원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나우학교)	109,780	2012.03.01.	2018.03.01.	2019.02.28.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동부나우학교)	163,846	2015.03.01.	2018.03.01.	2019.02.28.
			(사)키움과채움 (마음사랑학교)	147,647	2016.03.01.	2018.03.01.	2019.02.28.

연도	담당부서	위탁사무명	수탁기관명	위탁비용	위탁기간		
					최초위탁일	시작일	종료일
			(사)행복한청소년 (성모마음행복학교)	100,448	2014.03.01.	2018.03.01.	2019.02.28.
			(사)DTS행복들고나 (예하예술학교)	124,339	2017.03.01.	2018.03.01.	2019.02.28.
			(사)미래와공감 (치유학교생) 재한몽골학교	208,644	2012.03.01.	2018.03.01.	2019.02.28.
			(나섬아시아청소년학교)	67,308	2018.03.01.	2018.03.01.	2019.02.28.
			(사)한베문화교류센터 (다애다문화학교)	83,320	2011.03.01.	2018.03.01.	2019.02.28.
			구로청소년문화의집 (달꿈학교)	73,145	2015.03.01.	2018.03.01.	2019.02.28.
			성동청소년문화의집 (더하기학교)	63,509	2014.03.01.	2018.03.01.	2019.02.28.
			(사)지구촌사랑나눔 (지구촌학교)	81,459	2012.03.01.	2018.03.01.	2019.02.28.
			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 (톡윌터학교)	102,579	2011.03.01.	2018.03.01.	2019.02.28.
			(사)두리하나 (두리하나국제학교)	84,328	2014.03.01.	2018.03.01.	2019.02.28.
			(재)청소년과사람사랑 (사람사랑나눔학교)	216,630	2004.03.01.	2018.03.01.	2019.02.28.
			(사)DTS행복들고나 (예름예술학교)	175,000	2015.03.01.	2018.03.01.	2019.02.28.
	참여협력 담당관 (동부교육 지원청 교육협력 복지과)	지역교육복지센터 건축운영사업 (동대문교육복지센터)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	207,900	2013.05.08.	2016.03.01.	2019.02.28.
		지역교육복지센터 건축운영사업 (중랑교육복지센터)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231,000	2013.06.14.	2016.03.01.	2019.02.28.
	참여협력 담당관 (서부교육 지원청 교육협력 복지과)	지역교육복지센터 건축운영사업 (은평교육복지센터)	사회복지법인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231,000	2013.04.09.	2016.03.01.	2019.02.28.
		지역교육복지센터 건축운영사업 (서대문교육복지센터)	(사)탁틴내일	207,900	2016.11.01.	2018.03.01.	2019.02.28.
		지역교육복지센터 건축운영사업 (마포교육복지센터)	(사)한국청소년재단	207,900	2017.09.01.	2017.09.01.	2019.02.28.
	참여협력 담당관 (남부교육 지원청 교육협력 복지과)	지역교육복지센터 건축운영사업 (구로교육복지센터)	한국장로교복지재단	207,900	2012.04.01.	2016.03.01.	2019.02.28.
		지역교육복지센터 건축운영사업 (금천교육복지센터)	산아래문화학교	207,900	2013.05.01.	2016.03.01.	2019.02.28.
		지역교육복지센터 건축운영사업 (영등포교육복지센터)	재단법인 대길사회복지재단	207,900	2013.05.01.	2016.03.01.	2019.02.28.
	참여협력 담당관 (북부교육 지원청 교육협력 복지과)	지역교육복지센터 건축운영사업 (노원교육복지센터)	(사)청소년과 나란히	231,000	2012.04.01.	2016.03.01.	2019.02.28.
		지역교육복지센터 건축운영사업 (도봉교육복지센터)	(사)청소년교육전략21	207,900	2013.03.01.	2016.03.01.	2019.02.28.
	참여협력 담당관 (중부교육 지원청 교육협력 복지과)	지역교육복지센터 건축운영사업 (중구교육복지센터)	(사)흥사단	207,900	2013.05.20.	2016.03.01.	2019.02.28.
		지역교육복지센터 건축운영사업 (용산교육복지센터)	(사)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13,182	2017.03.01.	2017.03.01.	2018.02.28.
		지역교육복지센터 건축운영사업 (용산교육복지센터)	(사)사회적협동조합 커리어코칭	150,150	2018.04.11.	2018.04.11.	2019.02.28.
	참여협력 담당관 (강동송파 교육지원	지역교육복지센터 건축운영사업 (강동교육복지센터)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207,900	2013.05.01.	2016.03.01.	2019.02.28.

연도	담당부서	위탁사무명	수탁기관명	위탁비용	위탁기간			
					최초위탁일	시작일	종료일	
	청교협력 교육복지과	지역교육복지센터 구축사업(송파교육복지센터)	(사)섬김과나눔	207,900	2016.03.01.	2016.03.01.	2019.02.28.	
	참여협력 담당관 (강서양천 교육지원협 력복지과)	지역교육복지센터 구축사업(강서교육복지센터)	(사)흥사단	231,000	2012.04.01.	2016.03.01.	2019.02.28.	
		지역교육복지센터 구축사업(양천교육복지센터)	복지법인 살레시오수녀회	207,900	2013.04.01.	2016.03.01.	2019.02.28.	
	참여협력 담당관 (강남서초 교육지원협 력복지과)	지역교육복지센터 구축사업(강남교육복지센터)	(사)인터넷꿈희망터	207,900	2017.09.11.	2017.09.11.	2019.02.28.	
		지역교육복지센터 구축사업(서초교육복지센터)	재단법인 푸른나무 청예단	161,700	2018.03.16.	2018.03.16.	2019.02.28.	
	참여협력 담당관 (동작관악 교육지원협 력복지과)	지역교육복지센터 구축사업(동작교육복지센터)	학교법인 송실대학교	207,900	2016.11.01.	2018.03.01.	2019.02.28.	
		지역교육복지센터 구축사업(관악교육복지센터)	(사)들꽃청소년세상	207,900	2012.04.01.	2016.03.01.	2019.02.28.	
	참여협력 담당관 (성동광진 교육지원협 력복지과)	지역교육복지센터 구축사업(성동교육복지센터)	재단법인 서울가톨릭 청소년회	207,900	2013.06.19.	2016.03.01.	2019.02.28.	
		지역교육복지센터 구축사업(광진교육복지센터)	학교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 충신대학교	207,900	2016.03.01.	2016.03.01.	2019.02.28.	
	참여협력 담당관 (성북강북 교육지원협 력복지과)	지역교육복지센터 구축사업(강북교육복지센터)	강북교육지원센터 도깨비	207,900	2013.05.01.	2016.03.01.	2019.02.28.	
		지역교육복지센터 구축사업(성북교육복지센터)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	207,900	2012.04.07.	2016.03.01.	2019.02.28.	
	남부교육 지원청 중등교육 지원과	꿈세움Wee센터	재단법인 푸른나무 청예단	130,000	2009.09.03.	2018.01.01.	2018.12.31.	
	2019	남부교육 지원청 중등교육 지원과	꿈세움Wee센터	재단법인 푸른나무 청예단	135,000	2009.09.03.	2019.01.01.	2019.12.31.



# 관계 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 1.] [법률 제11212호, 2012. 1. 26., 타법개정]

-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당해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10. 4.] [대통령령 제28781호, 2018. 4. 3., 타법개정]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